

● 제293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휴일의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0. 6. 16.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 강동길 의원 대표 발의 】

의안번호 1538

### I. 조례안 개요

#### 1. 제안경위

가. 제안자 : 강동길 의원 발의(찬성의원 10명)

나. 제출일자 : 2020년 5월 25일

다. 회부일자 : 2020년 6월 18일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안이유

- 야간시간대나 공휴일 등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휴업함에 따라 의사의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경증 질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하게 됨으로써 응급실 과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진료가 필요한 경증 환자들이 현실적으로 진료 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는데 어려움이 많음.
- 이에 야간시간대나 공휴일 등에도 의사의 진료를 받거나 의사의 진단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공공 야간의원”을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야간·휴일 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는 한편,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야간 진료로 원활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야간·휴일의원 지정 및 지원을 통해 평일 야간, 휴일 등에 시민과 관광객 등이 필요할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야간·휴일의원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야간·휴일의원 지정 및 운영시간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지정된 야간·휴일의원의 운영실태 조사와 지도·감독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마.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것을 규정함(안 제7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의료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 사항 없음.

###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 1 제정안의 취지

- 제정안은 야간 혹은 공휴일 등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휴업함에 따라 의사의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응급환자가 아닌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함에 따라 응급실 과밀화가 발생함으로 치료가 급한 응급 환자의 진료가 어려워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동 시간대에 진료가 필요한 경증 환자들이 응급실이 아닌 진료가 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 야간의원”을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야간 진료로 원활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되었음.

#### 2 주요내용 검토

##### 가. 조례안 주요 내용

- 본 조례안은 야간·휴일 일차의원 지정 및 지원을 통해 평일 야간, 휴일 등에 시민과 관광객 등이 필요할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야간·휴일의원을 지역별로 운영하고자 하고 있음.
- 제정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공공 야간·휴일의원(이하 ‘의원’)이란 시장이 지정하는 의원을 말하여, 시장은 의원의 지정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하다고 하고 있음.

- 제정안에서는 공공 야간·휴일위원의 운영시간을 평일 오후 7시부터 익일 오전6시까지와 토요일 오후 3시부터 당일 자정까지 휴일 오전 0시부터 당일 자정까지로 하고 있으며, 시장은 야간·휴일위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위원회 지정 관리 및 사업의 운영 등에 대해 시장은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으며, 사업 운영에 있어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될 경우 표창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나. 사업의 운영에 관련하여

- 동 조례 제정안 제4조제3항에서 시장은 위원을 지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제4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재정지원에 대한 법률적 문제는 없다고 할 것임.
- 동 제정안의 비용추계에서는 기존의 야간·휴일 지정 의료기관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방식인 진료건수 당 정액 지원방식으로 비용을 산출하였음.
  - 평일야간 진료에 대한 단가는 의료기관 9,000원, 약국 1,500원으로 하고 진료대상자 1인당 단가를 총 10,500원으로 하였으며, 대상자는 2018년도 사업실적인인 410,737명을 가정하여 연

평균 4,312,739천원의 재정적 지원 비용을 산출하였음.

<표> 서울시 야간·휴일의원 운영 사업 지원금액 상세

구 분	운영시간	의료기관	약국
평일 야간	19:00~22:00	6,000	1,000
	22:00~23:00	9,000	1,500
토요일	15:00~18:00	6,000	1,000
공휴일	09:00~18:00	6,000	1,000

- 아울러, 야간의원 운영에 따른 병원 운영비 증가분 보전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 지급방식으로 지원할 경우 평균인건비<sup>1)</sup>의 25% 지원시 연간 2,244,000천원, 50% 지원시 4,488,000천원의 추가예산의 수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음.
- 서울시 야간·휴일 지정 진료기관 사업의 지난 3년간의 집행성과를 보면 일부 예산이 불용되고 있는 바 의원급 의료기관등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보임.

<표> 야간·휴일 지정 진료기관 집행률(2017~2019)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율)	집행잔액
2017년	2,893,320	2,573,602(90%)	319,718
2018년	2,893,320	2,555,713(88%)	337,608
2019년	2,600,000	2,337,575(90%)	262,425

- 동 조례 제정안을 통해 사업의 예측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를 이끌어 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1)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 연구보고서(2018.4)에 따르면 전국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보건의료인의 월평균 임금 추정액은 2016년 기준으로 의사의 경우 1천3백만원, 약사는 6백만원, 간호사는 3백만원임

## 다. 타조례와의 중복 문제

- 서울시의 '야간·휴일 지정 진료기관 사업'의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되었던 기존 「서울시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유사하나, 운영시간·사업의 대상·사업의 운영 관리 등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사업의 대상에 관광객을 포함하였고, 토요일 및 휴일에서의 운영 시간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있음.
  - 사업의 관리에 있어, 기존조례에서는 시장이 규칙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본 제정안에서는 시장이 사업을 지도, 감독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음. 또한, 사업 추진의 동력 확보를 위해 시장 표창을 명문화하고 있음.

### 3 종합의견

- 제정안은 공공 야간·휴일의료 기관의 운영을 통해 원활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 가능하도록 제안된 안으로 경증 질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하게 됨으로써 응급실 과밀화가 발생하고 경증 환자의 응급실 방문으로 인해 불필요한 응급의료 비용의 발생을 낮춰 시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안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 살펴보아야 할 점은 지난 본회의 심의 의결된 「서울시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상당 부분 유사한 점이 있어 중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사업의 대상을 관광객으로 확대하거나, 의원의 지정에

있어 지역별 균형을 명문화함으로써 사업 운영에 있어 시민의 편의와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 있어 조례 제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다고 할 수 있음.